



## |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 관련

**Q** 당사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별표4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을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통합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각처리방법에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소각되는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방법인 파쇄(재활용)로 처리해도 되는 지, 즉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통합하여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동일사업장에서 발생된 생활계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아 파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가처리시설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를 받아 자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여부 질의

**Q** 우리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신고 사업장(5종)으로 최초 신고시 포함되어 있는 세차시설(4.7m<sup>3</sup> /day)을 사업장 내로 위치를 이전하여 재설치하고자 합니다(용량 및 발생폐수성상은 동일함). 이런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유가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A**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일 사업장 내에 다른 장소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옮길 경우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안도금 배출시설이 현행 환경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Q** 당 공장은 철선을 인발하는 공장으로 중간 공정으로 구리와 아연을 도금하는바 현재는 전기도금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안도금으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환경관련법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등 아래 세가지를 문의하오니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안도금 수질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환경관련법 저촉 여부)
2.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축을 받는지 여부
3.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는 일반 Scrubber를 설치하여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A** 1)에대하여 : 시안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제9조에 따라 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며 수질환경보전법 제

33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에 대하여 : 질문내용의 시안화수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4 조 규정으로 정한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합니다.

3)에 대하여 : 시안화수소는 물에 잘 용해되므로 일반 Scrubber를 설치하여도 어느정도 처리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종변경

**Q** 기존의 닭사육시설 약1600평방미터의 신고 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을 소사육시설로 변경 시 소사육시설900평방미터 이상으로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바 축종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대상에 해당되어 축산폐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A**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득한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동법 제2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1]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변경신고와 관련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Q** 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이 변경되는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 기존 신고된 주유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경유저장탱크)이,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대체연료인 바이오혼합연료유 (BD20)로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4호의 규정에

**A**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기존 경우(오염물질 TPH)에서 경유와 식물성유류를 혼합한 바이오혼합연료유(오염물질 TPH)로 변경하는 경우 오염물질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폐기물인계서작성에대한 질의건

**Q** 저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폐기물인계서 작성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할때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인지 아님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A** 건설폐기물 중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